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아동수당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아동수당법」 제4조제5항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,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액수를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규제 신설·

폐지 등, 없음

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)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한다.

1. 1세 미만의 아동 : 100만원
2.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: 50만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경과규정) 법 부칙 제 6조에 따라 제3조 신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(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</u> <u>상 및 지급액) 법 제4조제5항</u> <u>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</u> <u>지급한다.</u> <u>1. 1세 미만의 아동 : 100만원</u> <u>2.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:</u> <u>50만원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571